



외국인전임교원임용규정

제 정 일	2011. 3. 1
개 정 일	2016.10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외국인전임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외국인전임교원이라 함은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외국국적 보유 교원을 말한다.

제 3조 (자격) ① 외국인전임교원은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입국자격을 부여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②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제 4조 (임용) ① 외국인전임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학술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정 이 체결된 외국대학의 협조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전임교원의 임용은 서류전형 후 적격자에 대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 5조 (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외국인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재임용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최초 신규임용 시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3. 3. 1)

② 외국인전임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재임용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. (개정 2013. 3. 1, 2015. 8. 1)

③ 외국인전임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5. 8. 1)

④ 외국인전임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 한다.

제 6조 (계약의 체결) ① 대학의 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외국인전임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② 계약의 내용에는 임용기간, 보수, 재계약에 관한 사항, 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 7조 (승진) ① 외국인전임교원의 승진은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년수에 해당하는 교원 중 승진심사 평가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3. 3. 1)

1. 승진 소요년수 (신설 2013. 3. 1, 개정 2016.10. 1)

직급별	조교수→부교수	부교수→교수
소요년수	6	5

② 외국인전임교원 승진심사 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하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5. 8. 1)

③ 승진 임용시기는 연 1회 10월 1일자로 한다.

제 8조 (신분보장 등) ① 외국인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,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

는 법인정관과 본교의 제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해당 교과목 또는 소속 학부(과)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
2. 출입국 관리법 위반(허가되지 않은 자격외 영리활동 등)
3.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

②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교의 제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0. 1)

제 9조 (처우) 외국인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학산학원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외국인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